**13장 비상대책위원회**

**제 75조 ( 목 적 )**

비상대책위원회는 선거가 무산되거나 각 학생자치기구의 정, 부대표의 탄핵, 사고, 궐위 등으로 인한 부재 시 각 자치기구가 성립될 때까지 해당 자치기구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76조 ( 구 성 )** (겸임금지는 임시 해제한다.)

1.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립된다,

1) 해당 자치기구 선거의 무산

2) 해당 자치기구 정, 부 대표자의 탄핵 및 궐위

2.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, 총대의원회, 학생복지위원회 중 하나 이상의 자치기구가 제76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.

3.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제76조 제1항에 의해 중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경우, 중앙 운영위원 중 2인을 각각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정, 부위원장으로 호선하여 겸임하도록 한다.

4.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비상대책위원을 추천하여 확대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이를 임명한다.

5. 단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단과대학운영위원 중 2인을 각각 단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정, 부위원장으로 호선하여 겸임하도록 한다.

6. 동아리연합회의 경우 전동대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6.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장단, 비상대책집행위원회로 구성한다.

**제 77조 ( 선출 )**

1. 중앙운영위원회는 총선거, 재선거 이후 제76조 제1항에 해당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. (단, 공고는 선거 종료 이후 72시간 이내에 진행한다.)

1)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사유

2)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절차 및 일정

2. 중앙비상대책위원장 선출 회의는 확대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임명한다.

3. 단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회의는 단과대학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임명한다.

4.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의 선출 공고는 선거 이후 24시간 이내 공고한다.

**제 78조 ( 집 행 국 )**

1. 비상대책위원회 집행국은 해당 단위 집행국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.

2. 비상대책위원장이 업무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 필요할 경우 집행국을 구성할 수 있다. (딘, 집행국의 구성이 어려울 경우, 비상대책위원장이 본래 장을 맡은 단위의 집행국에 업무를 배분할 수 있다. )

3. 해당 단위의 집행국에 준하는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.

**제 78조 ( 업무 및 권한 )**

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준하는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.

(비대위는 재정 78조 예산편성에 새로 만들 것.)

『 3. 비상대책위원회 예산은 제 78조 1항에 의거하여 확정한다 』

**제 79조 (해체)**

비상대책위원회는 차기 학생자치기구 선거 종료와 동시에 해체하고 이를 공고한다.

**기타 사항 ( 현 회칙에서 수정해야 할 사항)**

『 3장 제 19조 3항 다음과 같이 총대의원회 의장이 궐위 시, 부의장이 권한을 대행한다. 』

『 7장 제 45조 5항 삭제 혹은 다음과 같이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대의원총회에서 총학생회 정·부학생회장 탄핵 시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이 권한을 대행한다. 』

『 선거시행세칙 10장 제 83조 3항 총학생회장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제외한 경우에는 차기 당선자들의 회의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구성할 수 있다. (해당업무의 범위는 당선자와 임기자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 의사 결정 권한은 확대 운영위원회에서 가진다. 』 - 삭제

『 』 - 삭제